



## 실적관리대장 영업비밀 부정취득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 등 청구사건

19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3년(와) 제13897호
판결 일자	2002. 9. 26.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과인시스템 주식회사		
피고	1. A, 2. 오바타기계 주식회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5호, 9호, 14호, 동법 3조 1항, 2항		
영업 비밀	실적관리대장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경업금지의무		

### 02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기기 및 사무기기 등을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며, 이후 퇴사하여 다른 피고 오바타 주식회사에 취직하였다.

피고 A는 “실적관리대장”이라는 명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오바타기계 주식회사에 무단으로 공개하였다. 또한 피고 오바타기계 주식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였으나, 원고로부터의 경고 이후에 부정취득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허위의 진술을 고지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및 폐지를 구하며,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피고가 무단 반출한 “실적관리대장”은 기밀로서 취급되고 있던 영업비밀이며, 이를 관련 회사에 사용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본 사안의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정보가 아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고도 사용한 피고회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영업에 사용했던 정보는 피고A가 실제로 방문해서 기록한 고객정보이다.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 사실의 고지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원고인 것처럼 꾸며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 방문 시 오바타기계에서 온 사실을 숨긴적 이 없다.

### 04 판결 요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신규계약의 성사율을 높이는 유용한 정보이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건대, 잠금장치가 있던 곳에 보관하였던 정보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러한 자료를 옮겨 적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본 정보를 특정하고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바, 영업비밀로 성립할 수 없다.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직원의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며, 고용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A간에 해당 내용을 정한 특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본 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해당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부정경쟁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4호에서 말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 즉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 또는 유포하는 것을 요하는데, 본 정보에 기재된 임대료나 기종 등의 정보는 기존 고객의 계

---

약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은 고객을 방문하는 단계에서 신원을 확실히 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바, 누가 전화를 걸어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저하된다는 우려와 연동된다고 할 수 없다.

---

상기의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05 Key Point

---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밀에 관한 권한과 접근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특약하거나 규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로 소멸한다.

---